

포항시 다목적재난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및 제출일자 : 포항시장(2024. 11. 08)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2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19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-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(2024. 11. 20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지진방재사업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「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 제2조 등에 따라 다목적재난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다목적재난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권익 향상 등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다목적재난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정비 및 대상 추가(안 별표 2)
 - (현행)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부모와 자녀
 - (개정) 「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
 - 개인사용료 감면 대상 중 “청소년” 을 추가함
- ‘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’ 에 따른 조문 정비

3. 제안근거

- 「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
- 「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」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박명권)

- 본 조례안은 「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 개정(24. 3. 27. 시행)으로 다자녀 지원 기준이 2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다목적재난시설의 사용료 감면 범위 기준을 정비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 - 주요 내용으로
 - 안 별표2에서 다목적재난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함.
 - 종합검토 결과,
포항시 다목적재난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 정비로 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복지 증진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6. 토론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